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52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6. 13.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달성군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(안 제4조)
- 다. 입주기업체 지원(안 제5조)
- 라. 입주기업협의회 설립 및 운영, 기능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관리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0조)

3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 - (1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
 - (2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0조~제31조, 제44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4. 5. 9. ~ 5. 31.) 결과 : 의견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달성군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공단지”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조성한 것을 말한다.
2. “농공단지의 관리”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과 농공단지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농공단지 활성화 지원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법인,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1.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
2.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사업

3.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
4.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입주기업체 지원)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그 입주기업체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입주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비용 집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전항들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절차,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입주기업협회의 설립 및 운영)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창립총회 회의록
2. 정관 또는 회칙
3. 농공단지 관리계획서
4.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회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.

1.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

2. 농공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 유무

④ 협의회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.

⑤ 협의회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제7조(입주기업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입주기업체 현황,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

2. 입주기업체의 인력, 자금,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

3.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

4.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·강연회·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

5. 제8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

6.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

제8조(관리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에

계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장부,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, 단체,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, 그 입주기업체 지원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 입주기업협회의 설립 및 그 인가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③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입주기업협회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

1. ~ 7의3. (생략)

8. “산업단지”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·연구·업무·지원·정보처리·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·문화·환경·공원녹지·의료·관광·체육·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·개발되는 일단(一團)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국가산업단지: 국가기간산업,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에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
나. 일반산업단지: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
다. 도시첨단산업단지: 지식산업·문화산업·정보통신산업,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
라. 농공단지(農工團地)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·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
8의2 ~ 12. (생략)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

1. ~ 14의3. (생략)

15. “산업단지의 관리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
가.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·임대 및 사후관리

나.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유지·보수 및 개량

다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

16. ~ 23. (생략)

제30조(관리권자 등)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2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)
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-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리권자

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
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

4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

5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(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)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제31조(산업단지관리공단 등)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산업단지관리공단(이하 “관리공단”이라 한다)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(이하 “입주기업체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4조(입주기업체의 지원)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, 에너지이용효율 개선, 에너지공급, 노사관계 증진,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- ②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「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·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(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)를 할 수 있다.